



# 통반장 중앙일간지 구독료 지급관련 예산 전용 계획

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중앙일간지의 구독료를 홍보전산과에서 지급중이나 홍보전산과의 예산 부족으로 통반장관리 주무부서인 우리 부서의 예산을 활용하여 신문구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통반장의 다양한 정보습득 및 시책 전달 등 통반장의 임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

## I 추진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(예산의 전용)
- 일간신문구독 예산전용방침 【홍보전산과-44952(2015.12.8.)】

## II 예산전용 사유

-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제공 및 행정시책 전달 등 구정홍보효과 제고에 필요한 신문구독 사업의 지속추진하여 통반장 임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통반장 사기 진작 도모
-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중앙일간지의 부수증가로 홍보전산과의 예산이 부족하여 통반장 관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 예산 활용

## III 예산전용 내역

- 전용금액 : 금28,220,000원(금이천팔백이십이만원)
- 전용내역 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과목			예산액	전용금액		전용 후 예산
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감액	증액	
전용 전	통반장 활동지원	일반보상금	통장·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	1,702,760	△28,220		1,674,540
전용 후	통반장 활동지원	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2,600		28,220	30,820

붙임 : 예산전용요구서 1부. 끝